

전기 시공사에서 발생한 조기 위암

성별	남성	나이	만 66세	직종	전기 시공사	직업관련성	낮음
----	----	----	-------	----	--------	-------	----

1 개요

근로자 ○○○은 약 42년간 주로 건설현장의 전기배선을 시공하는 업무를 하였고, 2019년 8월부터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주차관리 및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년 5월에 대학병원에서 조기 위암을 진단받았다. 근로자는 근무 중 과도한 업무 부담, 스트레스, 야간근로로 인하여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2020년 7월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,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1월 11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.

2 작업환경

근로자 ○○○은 중학교를 졸업한 후 학원에서 5개월간 냉방기기 수리기술을 배운 후, 1973년부터 1975년까지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떡 가게에서 주로 떡 배달을 하였으며, 1975년부터 1978년 3월까지 보병으로 군생활 후 제대하였다. 이후 건설현장에서 전기배선 시공을 하다가 1981년부터 1990년 6월까지 건설회사 소속으로 중동(사우디아라비아, 쿠웨이트)에서 약 7년 6개월간 전기시공 업무를 하였다. 1990년에 귀국 후부터 주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전기시공을 하다가 2019년 8월 15일부터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주차관리원으로 약 9개월 근무 후 상병 진단되었다.

3 해부학적 분류

- 기타 암

4 유해인자

- 화학적 요인

5 의학적 소견

근로자 ○○○은 2020년 4월 8일에 내원 3일 전부터 하루 1회 가량 총 3회 흑색변을 보았고,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 동네의원을 방문하였다가,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다. 근로자는 2020년 4월 8일에 대학병원 검사에서 Hb 4.9g/dL로 확인되어 수혈과 응급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. 위 내시경 검사 상 다발성 위궤양(multiple gastric ulcer)이 관찰되었으며, 위궤양에 노출된 혈관

이 있어 결찰술(clipping)을 받았다. 의무기록에 따르면 2020년 4월 8일에 수행한 응급 내시경 검사 시 CLO 검사를 수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, 근로자가 제출한 의무기록에서 CLO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. 다만, 퇴원 요약지에 기록되어 있는 주 치료 약물 중 amoxicillin, clarithromycin이 포함되어 있고, PPI도 지속적으로 정맥 투약하여, CLO 검사 상 H.pylori 균이 확인되어 제균치료를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. 2020년 4월 14일에 추가로 시행한 위 내시경에서의 조직검사 결과상 선암종(adenocarcinoma)으로 의심되는 결과가 확인되었고, 2020년 5월 11일에 시행한 위 내시경에서의 조직검사 결과상 선암종(adenocarcinoma, moderately differentiated)이 확인되었다. 2020년 6월 12일에 조기 위암(early gastric cancer, type IIb) 진단 하에 복강경하 위 하부 절제술을 받았다. 근로자는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고혈압 환자로, 30갑년의 흡연력이 있었고, 음주는 1병/회, 2회/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. 위암과 관련된 가족력은 없다고 진술하였다. 2020년 5월 25일에 기록된 대학병원 의무기록을 보면 당시 근로자의 키는 176cm, 몸무게는 116kg으로 체질량지수는 $37.4\text{kg}/\text{m}^2$ 으로 비만이었다. 근로자는 건강검진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하였고,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도 고혈압 외에 특이병력은 확인되지 않았다. 근로자가 제출한 의무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흉부 X-선 검사 결과에서 흉막반이나 석면폐증 등 석면 노출과 관련된 이상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.

6 고찰 및 결론

근로자 ○○○(남, 1954년생)은 만 66세가 되던 2020년 5월에 조기 위암을 진단받았다. 근로자는 약 42년간 주로 건설현장의 전기배선을 시공하는 업무를 하였고,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주차관리 및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.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고무생산 산업 종사, x-선, 감마선 노출이 충분한 근거가, 석면과 무기납 화합물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비직업적 요인으로는 H.pylori 양성과 흡연력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근로자는 약 35년간 전기시공 작업을 하여, 근로자가 작업한 위치의 건축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을 경우 석면 노출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그 노출 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.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. 끝.